

제22대

2024. 4.10 실시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Examples of Illegal Activity in Overseas Voting of 22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신고·등록신청 방법

How to make a report and register
as overseas eligible voters

인터넷(ova.nec.go.kr)

Via Internet website

신고·등록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Go to the Report and Register page



공관방문·순회접수

Visit a Korean Embassy or Consulate in person or file a
written application in person with a diplomatic or consular
mission's employee who travels around its jurisdiction

우편·전자우편

By mail or E-mail

※ 해당 공관에 문의

Please contact the relevant Korean Embassy or Consulate





일러두기

본 자료는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재외국민의 자유로운 선거참여 속에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중 재외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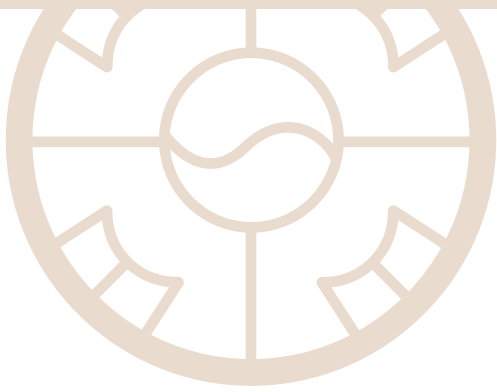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서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82-2-1390)를 하시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참여마당→정치관계법질의'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예시집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에도 그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의 법률 등에 위반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표기

-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 “입후보예정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 ⇒ “선거법 §112①”으로 표기
- “「정당법」제2조” ⇒ “「정당법」§2”로 표기
- “「정치자금법」제2조” ⇒ “「정치자금법」§2”로 표기



제1장 | 국외선거운동 개요

-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08
-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08
- 3.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09
- 4. 재외국민 ·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09

제2장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1. 선거운동의 정의 12
-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6
- 3. 정당 · 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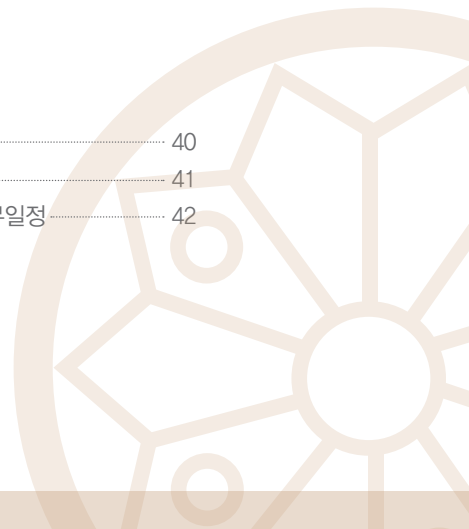


제3장 |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례

1. 사전선거운동	20
2. 투표참여 권유활동	20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21
4.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22
5.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25
6. 방송·신문 등 이용	26
7. 모임·집회 등 개최	27
8. 정당활동	28
9. 사조직·팬클럽 활동	29
10. 재외투표 관련	30
11. 전화 이용	30
1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31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32
14.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33
15.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34
1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35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36
18. 비방·허위사실 공표	38

부록 |

1. 재외선거제도 안내	40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41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42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Examples of Illegal Activity in Overseas Voting of 22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제1장 | 국외선거운동 개요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3.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4. 재외국민 · 외국인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1 국외에서의 「공직선거법」 적용

- **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정치 환경이 달라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이를 일부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이하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 따라서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 재외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실시되어 국내에서 실시되는 선거와는 달리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선거법은 국외에서의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서 문자메시지, 인터넷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법이 정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 정당·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연설과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국외에서의 위반행위 처벌

- ** 재외국민이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내선거에 적용되는 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영주권을 가졌거나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또한,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이 정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선거일 후 5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공무원이 국외에서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4 재외국민 · 외국인의 선거법 위반 시 받는 불이익

- ** 선거법을 위반한 재외국민·외국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입국이 금지 되는 것과 같은 불이익 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 | 국외 선거법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선거법 §218의30)

1) 제한대상

-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명확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 ❖ 국외에서 선거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 (피의자 중지로 한정)된 사람

2) 제한기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후 5년 이내(~2029. 4. 10.)





3) 제한방법

외교부장관은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이 있는 때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여권의 반납을 명하여야 함.

나. | 선거법을 위반한 외국인의 입국금지 (선거법 §218의31)

1) 입국금지 대상

국외에서 선거법에 금지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2) 입국금지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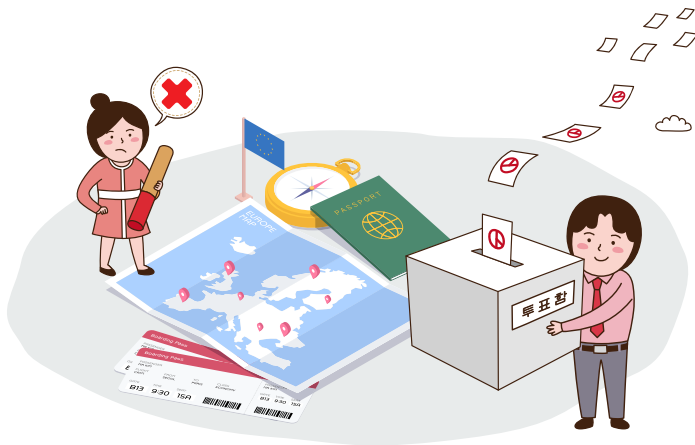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2028. 5. 29.)

3) 입국금지 방법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
- ❖ 법무부장관은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명할 수 있음.



수사에 응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경우는 입국금지 대상이 아님.





제2장 | 국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3.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선거운동의 정의

가. | 선거운동이란? (선거법 §58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



| 선거운동기간 등 주요 선거일정

구 분	후보자등록기간 (선거법 §49)	선거기간 (선거법 §33)	선거운동기간 (선거법 §59)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24. 3. 21. ~ 22.(2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24. 3. 28. ~ 4. 10.(14일)]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4. 3. 28. ~ 4. 9.(13일)]

선거운동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선거법 §58①단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특정 정당 또는 그 정강·정책, 특정 후보자 또는 그의 정견·정책에 관하여 좋고 나쁨, 찬성·반대 등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단순한 의견개진 행위, 선거에 관한 화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학벌이나 경력으로 보아 이번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는 등 유권자로서 가지는 관심의 표현행위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정책공약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간담회를 갖는 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이 게재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집회·캠페인·서명운동 등 방법 불문)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4) 통상적인 정당활동

- ❖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정당의 내부활동
- ❖ 정책추진 및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정치활동, 정당의 당세 확장을 위한 당원모집 등 통상적 활동, 정책의 보급·선전을 위한 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포함)로 전송(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 포함)하는 행위

‘명절 등’의 범위에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동창회·동호회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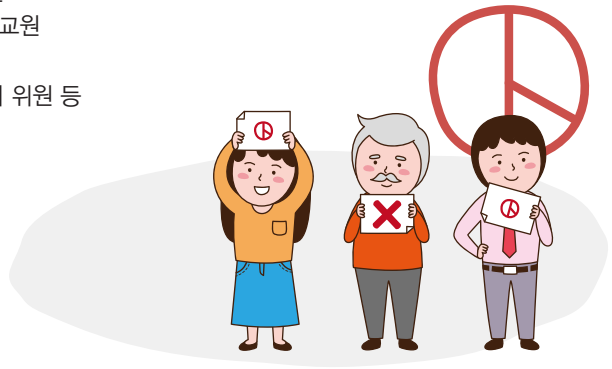
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법 §60)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미성년자(선거운동 당시 만18세 미만의 사람)
- 3) 선거일('24. 4. 10.)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 4)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자



다만,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7) 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 (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 8)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9) 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
 -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라. |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법 §218의14⑥)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

외국인의 국내 정치참여 관련 유권해석

(2007. 2.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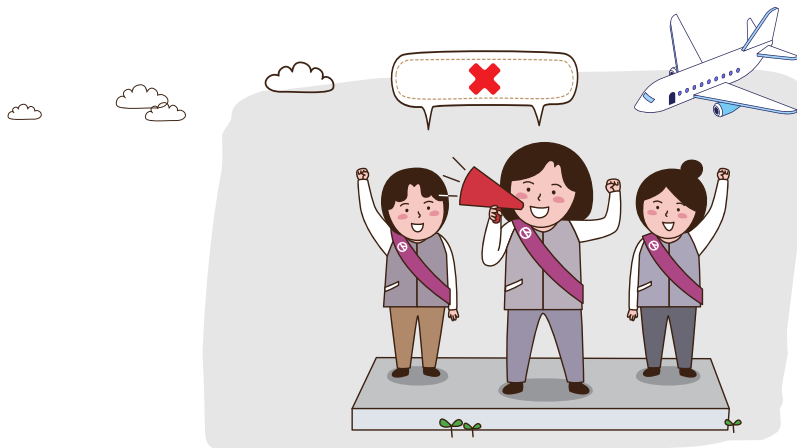
외국인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의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마.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선거법 §218의14⑦)

선거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59, §82의7①, §218의14①)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기 간 : 언제든지
- 3)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구 분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없는 방법
문자 메시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정보 전송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가능)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광고
전자우편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의미)으로 선거운동 정보 전송	예비후보자,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금지 (선거법 §250, §251)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나. |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선거법 §59, §218의14①)

- 1)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2) 기 간 : 선거일(2024. 4. 10.)을 제외하고 항상 할 수 있음.
- 3) 방 법 :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말(言)로(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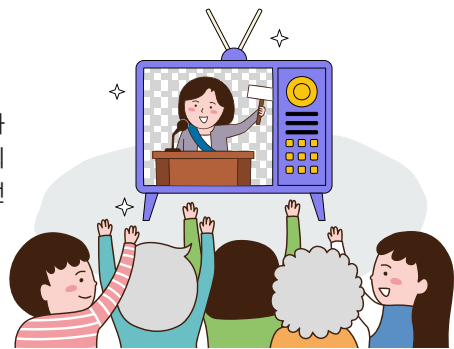
정당·후보자만 할 수 있는 국외 선거운동

가. |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선거법 §70, §218의14②)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5회 이내의 방송광고 가능

나. |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 (선거법 §71, §218의14③)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은 선거운동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 있는 국외 송출이 가능한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별로 각 1회의 방송연설 가능





다. | 국내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인터넷광고 (선거법 §82의7, §218의14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는 선거운동기간 중 국내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가능



페이스북은 인터넷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

인터넷언론사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함.
- 개별적인 인터넷언론사 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www.iendc.go.kr) 홈페이지 '자료·공지 - 인터넷언론사 현황' 참조

라. | (예비)후보자의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법 §59, §218의14①)

(예비)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을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최대 8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마. | (예비)후보자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전송 (선거법 §59, §218의14①)

(예비)후보자는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제3장 | 국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사례

1. 사전선거운동
2. 투표참여 권유활동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4.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5.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
6. 방송·신문 등 이용
7. 모임·집회 등 개최
8. 정당활동
9. 사조직·팬클럽 활동
10. 재외투표 관련
11. 전화 이용
1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4.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15.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1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17. 정치자금 모금·기부
18. 비방·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

가. |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법 §254)

적법한 선거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내에 법상 제한되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법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 시키기 위하여 지지·선전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음.

사전선거운동 금지 취지 (헌법재판소 2005. 9. 29. 결정 2004헌바52)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게 되면 평소에도 경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나. | 사전선거운동 성립시기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하며 위반자가 실제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위반죄가 성립하는데는 영향이 없으므로 처벌받을 수 있음.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법 §58의2)



할 수 있는 사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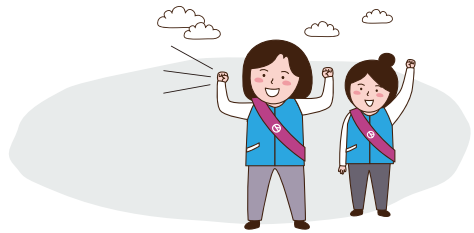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선거법 §59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가능



✕ 할 수 없는 사례


- ①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②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 ③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3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내집회에서 개별적인 지지호소를 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연설 형태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옥외집회에서 참석한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③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안됨.

✕ 할 수 없는 사례

- ① 선거공약이 게재된 피켓을 들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호별 방문하여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④ 교육적·종교적·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 대하여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⑤ 누구든지 제3자에게 말(言)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⑥ 자동전화걸기시스템(Auto Dial)을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선거관련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

가. | 기부행위 개념 (선거법 §112)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의미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는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이 있어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한인회 등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기부행위 제한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

기부행위 제한 취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579 판결 등)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





나. | 기부행위 주체별 제한내용

주 체 별	제 한 기 간	제 한 내 용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와 그 배우자 (선거법 §113)	항상 금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 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포함) 금지
정당(당원협의회 · 창당준비위원회포함), 정당 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선거법 §114)	선거기간 전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당해 선거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3자(누구든지) (선거법 §115)	항상 금지	선거에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의 범위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등) · 직계비속(자녀 · 손자 등)과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 토론자
-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 또는 그 임원 · 직원 등을 말함

다. | 기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벌 (선거법 §257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기부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

- 기부행위는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되므로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정당,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기부를 지시 · 권유 · 알선 · 요구한 자와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 가액을 제공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②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 가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3천만원 상한) 과태료 부과 (선거법 §261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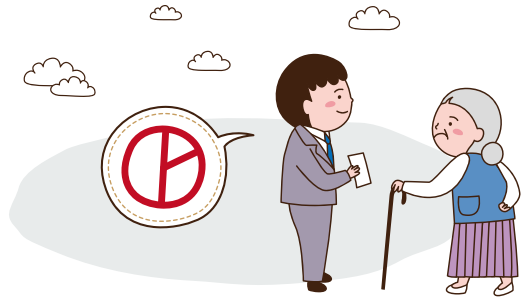


할 수 있는 사례

- ① 정당의 당직자, 후보자가 각종 재외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② 정책토론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① **연말연시에 금품 등 제공 (선거법 §115)**
한인회 대표자 등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② **행사에 찬조금 제공 또는 요구 (선거법 §113, §114)**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이 한인회 주최 간담회·체육대회 등에 찬조금을 제공하거나, 행사 관계자가 정당의 당직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 ③ **교통편의 제공 등 (선거법 §230)**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투표를 부탁하면서 재외선거권자에게 교통편의 제공 또는 교통비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④ **외국을 방문한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서적 등을 제공받는 행위 (선거법 §257)**



위반행위 조치사례

- 해외봉사단원들이 재외선거권자에게 재외투표를 위해 재외투표소 이동 시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시행한 행위
- 한인회 주관으로 개최한 정당정책포럼에서 정당 간부가 ○○한인회장에게 수목화 1점과 자서전 1권을 전달하고, 한인들에게 본인의 자서전 200~300권을 자비로 구입하여 추가로 전달하겠다고 발언한 행위



5 시설물 설치 · 인쇄물 배부

시설물 · 인쇄물 이용 선거운동 제한 취지

(헌법재판소 2009. 7. 30. 결정 2007헌마718)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할 수 있는 사례

- 1 행사주최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정책간담회 개최장소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의 재외국민에게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 발송 행위
- 2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 축전을 재외거주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3 선거일전 120일(2023. 12. 12.) 전에 기관지 · 회보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 소형사진과 함께 의례적인 축사 ·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1 **소품등 이용 선전** (선거법 §218의14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게재된 어깨띠 등 소품을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2 **선전인쇄물 배부 등** (선거법 §90, §93, §254)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공약이나 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 광고하는 행위
- 3 **선거공약을 게재한 초청장 · 안내장 발송** (선거법 §93, §254)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개최를 안내하는 초청장 · 안내장 · 팸플릿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는 내용이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 4 **한인회 등의 회보 · 소식지 이용 선전** (선거법 §93, §254)
한인회 등이 발행하는 회보 · 소식지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 ·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이 20여명의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한인 주택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 1,000부 정도 배부한 행위
-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각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다수 다니는 거리에 게시한 행위



6 방송 · 신문 등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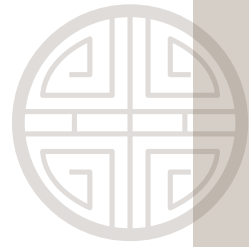
할 수 없는 사례

- ①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추천 또는 반대 광고** (선거법 §93, §254)
한인방송 ·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
- ②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선거법 §93, §254)
한인방송 · 신문 · 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 · 사진 · 경력 · 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③ **정당 ·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 (선거법 §9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④ **신문 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 (선거법 §95)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한인 신문 · 기관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 · 게시 · 첨부하는 행위

통상방법외의 방법이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8969 판결)

'통상방법외의 방법'이라 함은 그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래 실시되던 방법과 범위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반드시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선거홍보물의 일종으로 배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음.



⑤ 허위논평· 보도행위 (선거법 §9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⑥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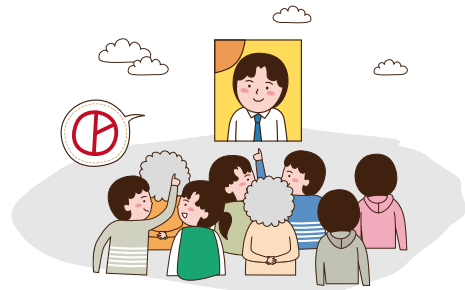
한인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재외신문에 '국민 대다수의 뜻을 기만하고 폭압하는 나쁜 정권에 투표하지 맙시다. (중략) 우리 손으로 바뀔시다. (중략)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는 내용 등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 단체 명의로 '○○대 대통령 후보로 ○○○후보를 지지합니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



모임· 집회 등 개최



할 수 있는 사례

누구든지 선거와 무관하게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아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 (법 §103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②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 개최 (법 §103③)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아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정당활동



할 수 있는 사례

- ①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행위
- ②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활동(호별방문 제외)하는 행위
- ③ 정당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 ④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정치자금법」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①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정당법」 §3, §37③)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모임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됨.

- ② 선거기간 중 입당원서 배부 등 (선거법 §144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③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정당 활동 (「정당법」 §22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④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선거법 §93, §138)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발송하는 행위
- ⑤ 정책간담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등 제공 (선거법 §113, §114, §115)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반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나 금품·음식물을 제공 하는 행위



9 사조직 · 팬클럽 활동

○ 할 수 있는 사례

- ①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 · 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고 통상의 활동 · 운영을 위한 내부 조직을 두는 행위
- ②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정치인 팬클럽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입후보예정자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 · 동정 등을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팬클럽, 대표의 명의 게시 불가)

✕ 할 수 없는 사례

- ① 정치인 팬클럽 설립 · 활동 (선거법 §87)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 ② 팬클럽 회원에게 연설내용 등 송부 (선거법 §87, §254)
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③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등 설치 (선거법 §87, §8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 · 동창회 · 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10 재외투표 관련

✕ 할 수 없는 사례

① 재외투표소 부근에서 지지호소 (선거법 §166)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② 투표지 촬영 및 공개 (선거법 §166의2, §167)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된 투표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재외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및 카페 등 2개 사이트에 게시한 행위
- 미국시민권자인 한국교포가 재외투표소 앞에서 투표소로 들어가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특정지역을 위해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인쇄물 배부한 행위

11 전화 이용



○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할 수 없는 사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이 아닌 음성이 녹음된 ARS 자동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2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 (선거법 §9)
외교관 등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선거법 §85①)
공무원 등 법령에 따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85②)
공무원이 소속직원이나 공공기관·공기업,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법인·단체·기업 등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④ **특수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법 §85③,④)
 - 한인학교 교사가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종교집회를 주관·개최하거나 진행하면서 재외국민인 소속 신도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기업체의 간부가 재외국민인 소속 직원에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금지 (선거법 §242의2)

- 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13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 취지

(헌법재판소 2008. 4. 24. 결정 2004헌바47)

공무원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임.

◆ 금지대상 공무원 등 (선거법 §86①)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임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



할 수 없는 사례

- ① 소속직원 또는 재외국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법 §86①)
- ②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법 §86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③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법 §86①)

④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선거법 §60①)

-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 재외국민 의견수렴 등을 명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⑤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14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법 §218의14⑦)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①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에게 보내는 행위
- ②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 ③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① 단체 명의의 인쇄물·시설물 배부·게시 (선거법 §90, §93, §218의14⑦)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②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추대 명목으로 서명·날인받는 행위 (선거법 §107)

단체 등이 특정인을 재외국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명목으로 재외국민으로부터 지지·서명을 받는 행위

③ 단체 대표자의 회원대상 선거운동 (선거법 §218의14⑦)

향우회·동창회, 정당의 후원조직 및 종교·친목 등 교민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또는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공명선거추진활동

공명선거추진활동시 유의사항

- 선거부정감시, 투표참여 홍보 및 캠페인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선거법 §10)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후원회, 팬클럽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1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할 수 있는 사례

재외동포 신문·방송 등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



이 경우 선거법 §108⑥ 및 「선거여론조사기준」§18을 준수하여 다음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①조사뢰자 ②선거여론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할 수 없는 사례

① 선거일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거법 §108)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 인기투표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사항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②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선거법 §10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③ 기타 여론조사 이용 선전행위 (선거법 §108, §254)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④ 허위여론조사 공표 (선거법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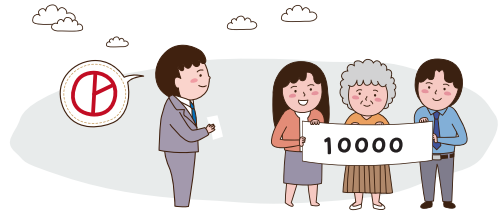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 보도하는 행위
-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를 하는 행위

⑤ 재외투표소 출구조사 (선거법 §218의17)

재외선거에서 텔레비전방송국 · 라디오방송국 ·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재외 투표기간에 재외투표소에서 출구조사를 하는 행위



정치자금 모금 · 기부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등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 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정치자금의 종류는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 등이 있음

- 당 비 :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 · 당규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이 대한민국 소속 정당에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후원금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기탁금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
- 보조금 : 정당의 보호 ·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 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할 수 있는 사례

재외국민 또는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후원회에 제공하는 행위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함.



할 수 없는 사례

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정치자금 조달 (「정치자금법」 §2, §45)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

② 단체와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법」 §31)

- 특정 단체(한인회·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가 소속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단체의 기금을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
- 법인 또는 단체가 재외국민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특정 정치인에게 기부하는 행위
- 외국인 또는 기업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③ 불법 정치자금 모금 또는 기부 (「정치자금법」 §2, §14, §45)

- 재외동포간담회·정책간담회·기자회견·향우회·한인회 행사 등 각종집회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로부터 후원금 모금 위임을 받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하는 행위
- 정당의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외국인이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행위

정치자금 후원방법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



18 비방 ·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의 공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공연성)의 요건을 충족

✕ 할 수 없는 사례

① 특정 지역 · 지역인 및 성별 등에 대한 비하 · 모욕행위 (선거법 §110)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②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250)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 경력 등 · 재산 · 행위 ·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③ 비방행위 (선거법 §251)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위반행위 조치사례

-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의 직계존속을 비방하는 동영상(○○○, 빨갱이애)을 게재하면서 ○○○에 대한 허위사실(◎◎은 인민군 상좌출신 등)을 공표한 행위
- 한인 지역 언론이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보도한 기사를 기초로 하여 ‘○○○와 ◎◎◎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사촌형부인 ◇◇◇총재가 말했나 보다’등 허위 · 비방글을 트위터에 게시한 행위



부록 |

1. 재외선거제도 안내
 2. 정당 · 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 사무일정





재외선거제도 안내

가. | 재외선거권자 (선거법 §218의4, §218의5)

- ◆ 국외부재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비례대표 ·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이 있음)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가 재외투표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음.

- ◆ 재외선거인 :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권만 있음)

나.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법 §218의4, §218의5, §218의8)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 신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참여방법	신청 · 신고서류 및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국외부재자 신고	국외부재자 신고서 ☞ 관할 구 · 시 · 군의 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아니한 사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 방법】 1)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청 2)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직원에게 서면 신청 ※ 1), 2)의 신청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은 가족(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을 말함)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를 대리 제출할 수 있음 3) 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3)의 신청의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 · 신청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2 정당·후보자에 관한 정보 제공

가. |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작성·제공 (선거법 §218의14④)

1) 제공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대상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3) 방법

- 공관 게시판 게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재외동포청 및 각 공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 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신고인에 한함)
 - ☞ 국외부재자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시 이메일을 기재한 사람에 한함

나. | 방송시설 관리·운영자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중계방송 (선거법 §82의2①, §218의14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운동 기간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제외)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선거법 §82의3①, §218의14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24. 1. 11. ~ '24. 3. 20.)까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음





[2024.4.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주요사무 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기준일	관계법조
'23. 10. 13. ~ '24. 5. 10.	금	재외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① 규§136의2
'23. 11. 12. ~ '24. 2. 10.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5,6 규§136의4,5
~ '24. 2. 10.	토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송부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법§218의7 규§136의6
'24. 2. 21. ~ 3. 1.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9 규§136의8,9
'24. 3. 2. ~ 3. 6.	토 수	재외선거인명부 등 열람 및 이의신청(불복신청은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선거일전 39일부터 35일까지	법§218의10,11
'24. 3. 7. ~ 3. 10.	목 일	재외선거인명부등 누락자 등재신청	선거일전 34일부터 31일까지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등의 확정일전일까지)	법§218의11③ 규§136의10②
'24. 3. 11.	월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선거일전 30일	법§218의13①
'24. 3. 19. ~ 3. 23.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6시)		법§49, 규§20
'24. 3. 21. ~ 3. 22.	목 금	정당·후보자 정보자료 제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218의14④ 규§136의13
~ '24. 3. 21.	목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 공고	선거일전 20일까지	법§218의17③
~ '24. 3. 24.	일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선거일전 17일까지	법§218의20②
~ '24. 3. 25.	월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재외투표기간개시일전 2일까지	법§218의18② 규§136의17
'24. 3. 27. ~ 4. 1.	수 월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8시~오후5시)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내	법§218의17 규§136의15
		재외투표 등 회송	재외투표기간만료일후 지체없이	법§218의21② 규§136의23
'24. 4. 5. ~ 4. 6.	금 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6시~오후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24. 4. 10.	수	투표 (오전6시~오후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선거일	제10장(투표) 제11장(개표)
		공관 개표(사유발생 시)	중앙위원회가 정한 일시	법§218의24 규§136의25

※ 「공직선거법」은 “법”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은 “규”로 각각 약기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

2023년 9월 22일 인쇄

2023년 10월 4일 발행

편집 겸 발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총괄과

· 주소 경기도 과천시 흥촌말로 44(중앙동 2-3)

· 전화 02-3294-8504

· 팩스 0505-058-1151

· <http://ok.nec.go.kr>

편집 및 인쇄 케이애드에스엔씨(주) 02-2659-755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NATIONAL ELECTION COMMISSION